

준 재 심 신 청 서

준 재 심 신 청 인 김관영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0길 20, 3층동 341호 (문래동3가)

준재심 피신 청 인 1.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신대방동)

대표자 이사장 유대운

법률상 대리인 이정훈

2. 정우조경 주식회사

서울 도봉구 방학로6길 4 (방학동)

대표이사 방정혁

상고장 각하 명령 대법원 2019다240537 2019. 11. 08. 각하명령

소송구조기각결정 대법원 2019카구71 2019. 11. 08. 기각결정

상고장 각하 명령일 2019. 11. 08.

소송구조기각결정일 2019. 11. 08.

명령, 결정, 송달일 2019. 11. 10.

위 당사자 사이의 대법원 2019다240537 상고장각하명령과

2019카구71기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며

명령과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준재심신청과 심리병합을 신청합니다.

원 명령과 결정의 표시

1. 상고장 각하 명령을 한다

2. 소송구조기각결정을 한다

준 재 심 신 청 취 지

2019다240537 상고장각하명령, 2019카구71 기각결정은 **적법절차 위반하여 자의적인 판단한 것으로** 각하명령, 기각결정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 제11조①항 **평등권**, (**법률 적용에서 법률적 평등권**) 제23조①항 **재산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 제27조①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4조⑤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소송구조를 허용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 제37조①항②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상고장 각하명령과 소송구조기각을 취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십시오**

준 재 심 신 청 이 유

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가. 판결의 효력 및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판결의 효력 및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대법원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4. 9. 13. 2004마660 결정;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참조).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재 1996. 10. 4. 95헌가1등, 판례집 8-2, 274 등).

1. 대법원 2019. 11. 08. 2019다240537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준 재 심 신 청 이 유

1.) 2019다240537 상고장각하명령은 2019카구71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에서 2019카구71 2019. 11. 08. 기각결정일이고 송달일이 2019. 11. 10. 임에도 불구하고 2019다240537 2019. 11. 08. 각하명령을 하여 적법절차 위반하였고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

자의적인 판단한 것으로 각하명령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 제11조①항 평등권, (법률 적용에서 법률적 평등권)

제23조①항 재산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

제27조①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7조①항②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가. 위 결정의 위법성 입증 나. 각하 명령 관련 대법원 판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义务的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25.자 92마 1134 결정,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 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등 참조).

한편, 인지첩부义务的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义务的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도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의 인지도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 다시 인지도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도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등의 유추적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义务的 발생이

저지되어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인지척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척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

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

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

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2019다240537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등 참조)[6].

재심대상판결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04. 11. 5.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송달되었는데,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서초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착오로 법원에 송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그 송달일자를 2004. 11. 4.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이 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04. 11. 25. 제출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등 참조)[6].

2, 대법원 2019. 11. 08. 2019카구71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한
준 재 심 신 청 이 유

1.) 소송구조 사유와 요건에 부합한 신청인(본인)은 적법 절차에 의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 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019카구71 심리는 법률적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재 1996. 10. 4. 95헌가1등, 판례집 8-2, 274 등).

적법절차 위반하여 법률적 근거도 없이 소송구조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각결정하여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헌법 제11조①항 평등권, (법률 적용에서 법률적 평등권)

제23조①항 재산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

제27조①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4조⑤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소송구조를 허용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

제37조①항②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가. 위 결정의 위법성 입증 나. 기각 결정 관련 대법원 판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개정 2016. 7. 13. [재판예규 제1591호, 시행 2016. 8.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각급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때(단, 패소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제외)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소송구조신청서[전산양식 A1330] 및 재산관계진술서[전산양식 A1331]를 그 기재례와 함께 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등 실무처리 중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구조요건의 심사)

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입증

2018재나227 재판부는

판결문 이유에서 명시한 재심사유와 요건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18재나227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명시한 재심사유와 요건들을 전부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와 법률에도 없고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로

각하 판결한 것은 부당하며 수년간 억울한 재판으로 비용이 고갈되었으며 재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본인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헌법 제11조①항 평등권, (법률 적용에서 법률적 평등권)

제23조①항 재산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

제27조①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③항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4조⑤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소송구조를 허용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

제37조①항②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또 한 원심판결의 잘못으로 대법원 재판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수년간 억울한 재판으로 비용이 고갈된 본인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재심사유와 소송구조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소송구조신청 사건을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률적 근거도 없이

2019다240537 상고장 각하명령하고

소송구조신청 2019카구71 기각결정한 것은 위법하며 헌법위반입니다.

재심사유와 소송구조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소송구조신청 사건을 허가하여 주십시오.

“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정면으로 위반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비양심적 판결하였고 ”

“ 재판부의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반대되는 자의적인 판결 결과 ”

“ 원고는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주지 않고 승소하였습니다.”

2018재나227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가 전부 인정한 재심사유와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018재나227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가 전부 인정한 재심사유, 요건

제451조(재심사유) ①항 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항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8재나227 판결문 내용

1. 장애인단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2. 이석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 등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이석현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원고가 위

3. 장애인단서를 작성한 이석현을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8. 10. 12. 각하의 “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요건이 불비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451조(재심사유) ①항 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항.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8재나227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 재심사유와 요건

1. 장애진단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2. 이석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 등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이석현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3.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이석현을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8. 10. 12. 각하의 “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2018재나227 판결 관련 대법원 판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이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 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흡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이므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흡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 판결 등 참

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증거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261 판결,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확정판결에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 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흡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1398 판결,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완성**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적으로 선언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고지받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심의 소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어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을 의미하는데,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이라고 하려면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판이어야 한다22)고 판시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에 정해진 적법절차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인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 대상을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3)

2019카구71는 **법률적으로 흠결 없는 소송구조신청을 법률적 근거 없이 적법절차 위반하여 기각결정하고 자의적 판단하여 부당한 결정을 한 결과**

2019다 240537 상고장 보정명령 인지대, 송달료. 미납 이유로
적법절차 위반하고 자의적 판단하여 상고장 각하 명령하였으며

억울하게 재판권을 빼앗기고 피고들이 “부당승소하게 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적법절차 위반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고장 각하 명령과
소송구조 기각결정한 것은 위법하며 헌법위반입니다.

또한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

위 명령과 결정들을 취소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주시시오.

2019년 11 월 19 일
준재심신청인 김관영 (인)

대 법 원 귀중